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탄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기한 연장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격 안정,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등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법령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부탄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제2조의2 ①항3호)

현 행	개 정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 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3. ----- ----. ---- 2024년 2월 29일 ----- -----.

2. 발전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제2조의2 ①항4호)

현 행	개 정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4. ----- -----. 라. ----- 2024년 6월 30일 -----

3. 유연탄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제2조의2 ①항5호)

현 행	개 정
<p>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p> <p>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p> <p>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3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p> <p>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p>	<p>5. ----- -----</p> <p>가. ----- ----- ----- ----- ----- 2024년 6월 30일 ----- -----.</p> <p>나. ----- ----- 2024년 6월 30일 ----- -----</p> <p>다. ----- ----- 2024년 6월 30일 ----- -----.</p>

III. 시행일

-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첨부 파일(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I Contact



안성호 관세사
T 02-6011-3048
E shahn@esein.co.kr



이지은 관세사
T 02-6011-3092
E jelee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